

의안번호	326
발의일자	2023. 8. 17
회부일자	2023. 8. 22

제341회 도의회 임시회
제1차 농수산위원회
2023. 8. 30. (수)

『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

농 수 산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이 진 영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서석영 의원 외 19명

2. 개정이유

-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컨테이너 외 신규 화물 지원제도 마련으로, 물동량 확대 및 항로개설을 통한 항만운영 효율성과 도내 해양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재규정함(안 제2조)
-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신설함(안 제4조)
- 지원금 용어를 재규정하고 컨테이너 외 화물에 대한 지원금 관련 사항을 신설함(안 제5조)

4. 관련법령

- 물류정책기본법, 해운법

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
- 예고기간 : 2023. 8. 23. ~ 8. 28. 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-95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6. 검토의견

가. 본 개정 조례안은

- 포항 영일만항의 활성화 및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화물 지원제도 마련을 통한 물동량 확대 및 항로개설로 도내 해양물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는 용어를 재규정하여 컨테이너 화물 외 화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의 뜻을 규정함.
- 안 제4조는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와 시장·군수의 협의를 의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5조는 제1항제4호의 “화물이용장려금”을 “항만이용장려금*”으로, 제4항의 “특정화물유치지원금** 화물이용장려금”을 “특정화물유치지원금은 항만이용장려금”으로 개정하여 조항간(제4조제2항)의 용어를 일치시키고, 조항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,
- 도지사와 시장·군수의 협의를 통해 컨테이너화물 외의 화물에 대한 지원의 기준·규모·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, 지원범위 대상의 확대를 통한 항만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* 영일만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장려금

** 영일만항에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지원금

다. 종합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용어를 재정비하고, 컨테이너 화물 외 신규 화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, 향후 포항영일만항의 물동량 확대 및 항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검토 결과,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,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.